경상남도 공고 제2021 - 1247호

2021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계획 공고

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소재지)	채용분야	채용직군	인원(명)	비고
계			3	
밀양소방서(밀양시 밀양대공원로 66)	영양사	<나>직군 관련기능 종사직	1	
남해소방서(남해읍 스포츠로 81)			1	
함양소방서(함양읍 고운로 161-41)			1	

○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업무 내용
영양사	○ 소방서청사 급식소(본서+구조대+직할 안전센터) - 「식품위생법」 제52조 2항에 정하는 "영양사" 직무 수행 - 「식품위생법」 제51조 2항에 정하는 "조리사" 직무 수행 ○ 일반 안전센터 등 급식소 식단 및 위생관리 ○ 급식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등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 >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공무직노동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한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 : 만60세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에 한함
- 거주지 제한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성별, 학력 : 제한 없음

나. 개별 자격 기준 및 가점 부여 요건 등

- 필수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영양사 면허증(「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 자)

· 조리사 면허증(「식품위생법」 제53조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 관련 질병소지자 응시불가
- 개별 가점 기준 : 영양사 면허증 취득 후 집단급식소 근무경력

채용분야	개별우대(가점) 요건	점수표	
영양사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12호에서 정한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근무 경력**자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경력은 영양사 면허증 취득 이후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함	48개월 이상	3점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2점
		13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 13개월 미만	0.5점

※ 필수자격 및 개별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등은 원서제출 기한 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와 미제출 시에는 가점 불인정

○ 공통자격 요건, 필수자격, 개별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 안내

구 분	증빙자료	제출 및 증빙 요령
공통자격	주민등록초본	전체 주소변동 내역이 나타나도록 발급하여 제출 (기준일 : 공고일 전일)
필수자격	① 영양사 면허증 ② 조리사 면허증	① 영양사 면허증 사본 제출 ② 조리사 면허증 사본 제출(조리기능사 자격증 아님) *** 상기 면허 2종은 공고일 전일기준 유효한 면허증일 것**
우대요건 (경력가점)	① 경력(재직) 증명서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① 해당기관 등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되 근무기관*(업체), 근무기간, 담당업무(영양사 등)가 명시되어야 함 * 위탁급식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한 기관(업체)명을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 다만, 해당 기관 업무분장 관련 내부 결재문서 첨부 등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자료 추가 첨부 시 인정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사본 제출 * 위탁급식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제 근무한 기관(업체)에 발급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 증빙자료가 불명확할 경우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시험 방법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공통 요건 기준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 응시연령 및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 여부, 직무수행 관련 개별 가점 부여 요건 등 형식 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기준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공통요건을 충족한 전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처리
- 선발예정 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개별가점 부여 요건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선발예정 인원의 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기준
1명	7배수 이내	① 서류전형 개별 가점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어 배수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동점 인원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7배수 예시) 8명이 응시하였을 경우 1위 ~ 5위까지 가점 보유, 6위 ~ 8위 모두 가점이 0점으로 동점일 경우 8위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해당 채용분야에서 개별 가점이 있는 자가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점이 있는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② 서류전형 개별 가점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응시 자격 공통요건에 적합한 사람은 모두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2차 : 면접시험

- 대　　상 : 1차(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
- 평가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등의 검증을 위해 아래 5개 평정항목에 대해 평가함(총점 100점 기준)

① 노동자로서의 정신자세 및 건강상태(25)

② 채용 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30)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15)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면접위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와 개별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 불합격기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면접 100점 중 60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항목 5개 항목 중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요소별 배점의 60%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4. 채용 일정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1. 7. 27.(화)	'21. 8. 9.(월)~11.(수) (09:00~18:00)	'21. 8. 31.(화)	'21. 9. 6.(월) ~ 10.(금)	'21. 9. 17.(금)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채용공고'(http://gyeongnam.go.kr)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채용공고' 상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접수장소 :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본관 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 접수 대신 등기우편 접수를 당부 드립니다.

<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 주 소 : 우)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유 효 일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택배,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
- 추가서류 : 반신용 봉투(응시표 수령용, 등기용 우표 부착, 수신인 성명·주소 기재)

6.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붙임 양식)

②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

▹ 응시 부서, 분야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중복응시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 1매

③ 이력서 1부(붙임 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 A4 3매 이내)

⑤ 주민등록초본 1부

▹ 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전체 주소 변동내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⑥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업체), 직책, 담당업무(영영사 등),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를 별도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할 경우에 경력 인정 원칙

▹ 경력기간은 서류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점 해당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기간과 일치여부 검토를 위해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⑧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최종 학력증명서 1부(원본)

⑩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원본)

▹ 상기 개별 가점 부여 요건 관련 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

다만, 개별 가점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⑪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붙임 양식)

⑫ 가점 및 우대사항 관련 서류 1부

-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함(예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7.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하므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8. 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채용공고(http://www.gyeongnam.go.kr) 게시

9. 보수 수준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50조(임금)의 규정에 의함

※ '20년 기본급(1호봉) : <나>직군 2,398천원/월

10. 복무관리 및 신분보장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의함

- 정　　년 : 만60세까지(규정 제57조)
- 근로계약 : 소속 부서의 장과 공무직노동자간 체결(규정 제17조)

· 신규 채용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예정부서(분야)별 근무조건

근무예정부서(분야)	근무조건*
밀양·남해·함양소방서 (영양사)	○ 주 5일(월 ~ 금), 40시간/주 원칙 - 소방서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근거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30조(근로시간)에 의거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8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보수 및 복무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근무예정부서로 직접 문의

*** 근거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30조(근로시간)에 의거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8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보수 및 복무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근무예정부서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3일 전까지 본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에라도 응시자격 검증,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계약해지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 (http://www.gyeongnam.go.kr)에 게재함.(다만, 체력검정시험 일정/장소는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 채용절차 : 인사과 고시교육담당(055-211-3524)

▹ 직무내용, 근로조건, 보수 등 : 소방본부(☎ 211-5333) 또는 해당 부서 담당자

연번	근무처	채용인원	소재지	연락처	비고
계	**3개 소방서**	**3명**			
1	밀양소방서	1명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66	350-9214	
2	남해소방서	1명	경남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81	860-9215	
3	함양소방서	1명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161-41	960-9214	

12. 코로나19 예방 유의사항

○ 면접시험일까지 해외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면접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신 고 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경상남도 인사과(055-211-3524)**

○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

① **(출입금지)**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②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③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개인 음용수 준비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확 진 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감 염 병 의 심 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1. 6. 16. 시행)

***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